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은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834

발의연월일: 2025. 6. 13.

발 의 자: 조은희 · 신성범 · 이성권

서천호 · 김재섭 · 김용태

박정하 · 김미애 · 박충권

조지연 · 배준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공예식장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「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」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제220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829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780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에 제2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연 번	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	특례유형	존속기한
220	「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	사용료등의 감면	2032. 12. 31.
	에 관한 법률」 제13조		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